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정관

1987년 3월13일	제정
1988년 1월28일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1993년12월 3일	일부 개정
1996년11월 6일	개정
1998년11월14일	일부 개정
2001년11월 1일	일부 개정
2003년 5월14일	일부 개정
2005년11월 4일	일부 개정
2009년10월 9일	일부 개정
2010년12월 8일	일부 개정
2015년11월 6일	일부 개정
2016년11월11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조사 및 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회지 및 도서의 발간
- 견학 및 시찰
-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전 각호 이외의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정회원은 조명 및 전기설비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또는 업체, 단체로 한다.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7인 포함)
2. 감사 2인
- ② 임원의 등기는 직무별 소수 대표 임원으로 한다.
- ③ 지회장 중에서 부회장 정수이외의 비등기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는 제12조①의 1, 2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2. 회장선출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모든 임원은 업무의 계속성을 갖는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평의원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무능력자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학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자진사임 및 학회 업무상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제16-1조(명예회장, 원로위원, 최고정책위원, 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자를 명예회장, 원로위원, 최고

정책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원로위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며, 최고정책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 외에 대외협력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하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④ 명예회장, 원로위원, 최고정책위원, 자문위원은 이사회,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예산, 결산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총회의결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수(정권자불포함)의 10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2조(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부회장 및 이사의 임명 동의
-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정관, 규칙변경안 및 지회설치의 동의
- 4. 중요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제24조(평의원 선출방법 및 정수) ① 평의원회의 정수는 160인 이내로 하되, 직선 80인과 간선 80인 이내로 한다.

② 평의원은 정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한해서 보선할 수 있다.

④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제23조의 안건과 필요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참석

으로 성립하되, 임원 및 평의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단, 2, 3, 4, 5항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

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및 회지발행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내, 당해연도 종료 후 2개월내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수지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의 소집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부칙(1988.1.28.)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1987년 3월 13일부터 유효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1988.1.28.) 이 정관은 초대평의원,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부칙(1988.1.28.) 이 정관은 임원 및 평의원의 정수는 97년(4기)부터 적용하되, 임기는(5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3.12.3.) 이 정관은 199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6.) 이 정관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14.)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5.14.) 이 정관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4.) 이 정관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8.) 이 정관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6.) 이 정관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1.)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